

특별구제계정 지원

■ 건강피해 미인정자 등에 대한 지원은?

다음의 경우,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인정 받는다면
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

● 구제급여 상당지원

- 지원항목 : 구제급여
- 지원대상 :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간의
의학적 개연성, 시간적 선후관계, 건강피해의
중증도·지속성 등을 충족하는 건강피해
미인정자

● 긴급의료지원

- 지원항목 :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
- 지원한도 : 3천만원 이내
- 지원대상 : 노출조사 결과, 가습기살균제 관련성, 의학적
긴급성 및 소득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
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인정신청자

● 원인자 미상·무자력으로 인한 피해 지원

- 지원항목 : 구제급여 및 배상차액
- 지원대상 : 건강피해 인정자 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
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
자력이 없어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을 수
없는 피해자
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은
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에
언제든지 물어보세요.

 **T : 1833-9085**
(구제바로)

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
www.healthrelief.or.kr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| www.keiti.re.kr



주소 |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

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



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안내



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

피해 인정신청

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란?

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

※ 현재 폐질환, 태아피해, 천식피해를 인정

건강피해 인정 신청 방법은?

접수처 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

신청방법 : 온라인, 우편, 방문접수

- 주소 :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층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
- 대표전화 : 1833-9085(구제바로)
- 피해지원종합포털 : www.healthrelief.or.kr

제출서류 :

-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서
- 지정의료기관 검사서류(3개월 이내)
 - ※ 상기 검사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며,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저소득자(중위 소득 50%이하인 경우 사후 환급 받을 수 있음)
- 「의료법」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
- 그밖의 건강피해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검사 결과물 등

지정의료기관 현황

기관명	전화번호	지역	기관명	전화번호	기관명
국립중앙의료원	02-2260-7114	서울	강원대학교병원	033-258-2099	강원
삼성서울병원	02-3410-1346	서울	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병원	033-741-1670	강원
강북삼성병원	02-2001-2554	서울	전북대학교병원	063-259-3100	전북
서울아산병원	1688-7575	서울	전남대학교병원	성인 010-6390-6315 소아 010-5790-3913	광주
서울성모병원	성인 02-2258-1976 소아 02-2258-6781~2	서울	울산대학교병원	052-230-1458	울산
가톨릭관동대국제성모병원	032-290-2865~6	인천	동아대학교병원	051-240-5483	부산
인하대학교병원	성인 032-890-3396	인천	고신대복음병원	051-990-6368	부산
단국대학교병원	041-550-6014	충남	제주대학교병원	064-717-1614	제주
충남대학교병원	042-280-6755	대전	대구파티마병원	1688-7770	대구

※ 인하대학교병원에서의 검사는 성인만 가능하오니, 소아는 타 병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
인정절차

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절차는?



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유효기간은?

- 인정일로부터 5년
-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올 가망이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효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유효기간의 갱신을 신청
 - ※ 건강피해가 완치되었거나 개선되는 경우 건강피해 인정이 취소되거나 피해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

구제급여 지원

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가 인정되면, 지원받는 구제급여 종류는?

피해자가 생존하신 경우,

- 요양급여 :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의료기관에 지출한 치료비용 중 본인 부담금
- 요양생활수당 : 피해등급에 따라 매달 지급

<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>

검사방법 피해등급	노력성 폐활량(FVC)	1초량(FEVI)	폐활산능(DLco)
고도장해	45% 미만	45% 미만	45% 미만
중등도장해	45% 이상 55% 미만	45% 이상 55% 미만	45% 이상 55% 미만
경도장해	55% 이상 70% 미만	55% 이상 70% 미만	55% 이상 70% 미만
등급 외	70% 이상	70% 이상	70% 이상

<건강피해 피해등급별 지원 금액> (‘18년도기준)

피해등급	고도장해	중등도장해	경도장해	등급 외
금액	973,707원/월	649,138원/월	324,569원/월	-

- 장의비 :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255만원 지급(‘18년도기준)
- 간병비 :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동을 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
 - ※ 간병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서 등 필요

<간병비 지원 금액>

간병인	간병 필요등급	간병 1등급	간병 2등급	간병 3등급	간병 4등급
전문 간병인		67,140원	55,950원	44,760원	미지급
가족, 전문 간병인 외의 간병인		61,750원	51,460원	41,170원	미지급

피해자가 사망하신 경우,

- 특별유족조위금 : 특별유족에게 40백만원 지급(‘18년도기준)
- 특별장의비 :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255만원 지급(‘18년도기준)
- 구제급여조정금 : 사망한 피해자가 지급받은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및 간병비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지급

※ 유족순위 :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> 자녀 > 부모 > 손자녀 > 조부모 > 형제자매